

[안내]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 수수료 변경 공지

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 개정(2012. 02. 18) 및 시행(2013. 02. 18)에 따라, 2014년 6월 1일자로 ‘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’ (제26조)를 적용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산정 방식이 변경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.

1. 시행일 : 2014년 6월 1일

○ 계약일 기준 2014년 6월 1일부터 변경된 인증 수수료 적용

2. 변경내역

○ ‘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’ 제26조 ①항 및 [별표5] ‘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산정기준’ 적용

< 인증 수수료 산정 방식 > (고시 제26조)

인증 수수료 = 직접인건비 + 직접경비 + 제경비(직접인건비×최대 120%) + 기술료((직접인건비+제경비)×최대40%)

구분	현행	변경	사유
신청비	500,000원 ※ 갱신심사 300,000원	0원	신청기관의 부담 경감
직접인건비	962,740원	1,400,000원	'13년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적용
직접경비	0원	0원	동일
제경비	0원	0원	동일
기술료	0원	280,000원 (직접인건비의 20%)	ISMS 인증심사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 등 제반활동

⇒ 고시 기준(표준 적용 : 제경비 110%, 기술료 20%) 대비 47.6% 수준

3. 유의사항

○ 고시 제26조 ②항에 따라, 연간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30% 할인율을 적용합니다.

○ 인증 수수료 변경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: 02-405-5483 또는 5697

※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(KAIT) : 02-6384-0590